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0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박광온·김영배·임호선

이탄희 · 정필모 · 고영인

오영훈 · 김승원 · 이장섭

송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 에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외사업 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외 진출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국내 신설·증설 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하며, 연 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및 제1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를 "국내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를 "국내사업장의"로 한다.

2.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 중 "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을 "임대비용, 설비투자비및 연구개발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	3
이 <u>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u>	<u>대통령령으로</u>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	
<u>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	
는 것을 말한다.	<u>.</u>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4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	나
업으로서 <u>해외사업장을 청</u>	<u>대통령령으로</u>
<u>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절차	
를 진행 중인 기업	

제	7조	(ス)	원대	상	국١	개복	刊フ]업	의
	선기	정)	1	산입]통/	상자	원투	부장	관
	은	해	외진	출 フ	업의	븨	국니	뷔복	귀
	및	정초	박 지	원을	- 위	하ㅇ	d =	구내	복
	귀기	기업	중	다음	음 Z	<u> </u>	호의	访	건
	을	충	족하	는 >	기업	을	지원	밀대	상
	국니	H복	귀기	업으	.로	선	정힡	<u>-</u>	수
	있다	7.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u> 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u>.</u>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사업
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
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국내사업장의

- 3.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 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 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 산·양도를 완료할 것
-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 | <삭 제> 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 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 을 축소할 것
- 4. (생략)
- ④ (생략)
-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 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

3.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u><</u>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
승)
②
임대비용, 설비투
자비 및 연구개발비
